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한국환경공단

- 순 서 -

- 1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개요
-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감면
- 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5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등 방법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
 - ✓ "폐기물", "소각·매립"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 ✓ "부담금":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생활폐기물 처리의무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 처리의무자)

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법률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부터 제24조 (이의신청)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정: 2016.5.29.)
 - 2018.1.1.이후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가(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전액 납입됨
- 국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특정 재정사업에 집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시설 개선 등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1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발생원(업종), 배출자(기업규모), 배출·처리량 등과는 관련 없음

부과대상 폐기물 유형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 건설폐기물은 제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대상이 아님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제1호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s)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6.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

7.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

8.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소각

소각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일반소각시설
- ② 고온소각시설
-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을 포함한다)
- ④ 고온 용융시설
-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에서 ④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매립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차단형 매립시설
- ② 관리형 매립시설

* 민간 관리형 매립시설, 민간 차단형 매립시설, 기타 매립시설,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 국가 매립시설

-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소각·매립이 아닌 경우(재활용, 파쇄·분쇄 등)는 대상이 아님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배출자가 납부의무자임
- ✓ 처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처리자는 새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자임
- ✓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자신의 사업장(예. 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됨

사업장폐기물

다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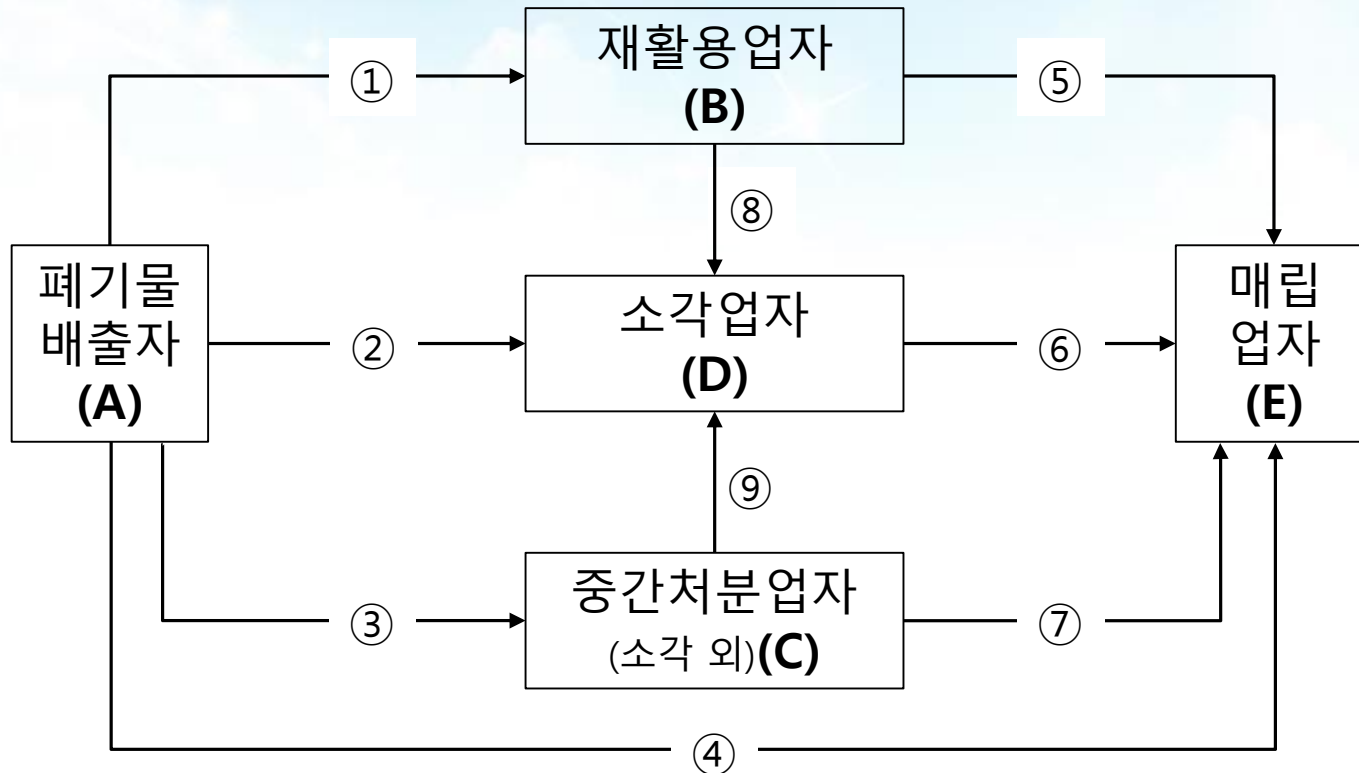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사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납부의무자

<참고> 폐기물 처리 체계에 따른 납부의무자



①, ③ : 소각 또는 매립되지 않으므로 부과 대상이 아님

②, ④ : 부과 대상이며, 폐기물배출자인 A가 납부의무자

⑤, ⑥, ⑦, : 부과 대상이며, 새로운 폐기물배출자가 되는 B, C, D가 납부의무자

⑧, ⑨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처분(소각·매립)한 폐기물의 양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begin{array}{|c|} \hline \text{폐기물처분부담금} \\ \hline \text{(원)}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처분한 폐기물량} \\ \hline \text{(kg)}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산출기준} \\ \hline \text{(원/kg)}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산정지수} \\ \hline \end{array}$$

- **처분한 폐기물량** : 위탁 또는 자가처리한 폐기물 유형별 소각 또는 매립한 중량 (kg)

* 정기 신고 : 전년도 처분량(1월 ~ 12월), 수시 신고 : 당해년도 처분량 (공사시작일 ~ 폐기물처분 종료일)

-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를 곱한 값
- **산출기준** : 폐기물 유형별 부과요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10원/kg	-
	가연성	25원/kg	10원/kg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 (불연성폐기물)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수지),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재(광물류로 제조된 경우),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다만 배출단계에서부터 두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 폐기물로 본다.**
 - 가연성 물질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 필요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의 **감면신청에 의해서** 처리
-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매립

[감면대상]

- 자가매립시설*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

[감면구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재활용한 경우

[감면비율]

100%

폐기물을 매립한 2년 이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재활용한 경우

50%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부과 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감면대상]

-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

[감면구분]

소각열에너지를 50%이상 60%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

소각열에너지를 60%이상 75%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0%

소각열에너지를 75%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감면비율]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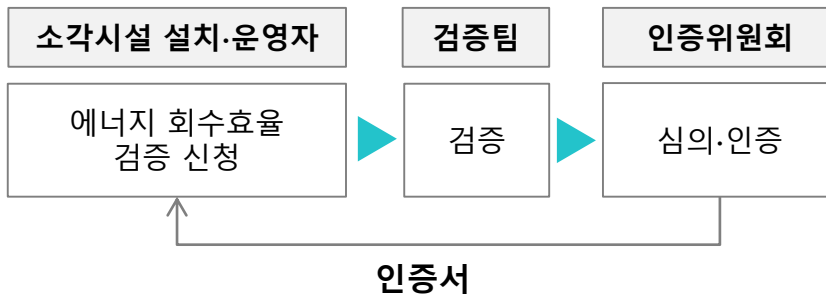
- 1)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2)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 3) 2)에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간은 1년을 원칙
-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 생산하여 이용한 에너지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량을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기록



<별지 서식 7>

제 호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1. 상 호(명칭):
2. 성 명(대표자):
3. 주 소:
4. 인 증 사 항:

대상폐기물종류	
소각시설 설치위치	
에너지 회수·사용 유형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 년 월 일	
인증유효 년 월 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의해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은 시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3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감면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감면비율]

100%

4 중소기업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감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

[감면구분]

[감면비율]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

5 지정폐기물 처분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감면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감면비율]

100%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6. 30>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자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6

도서(島嶼) 폐기물 처분

-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감면대상]

[감면비율]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島嶼)에서 발생한 폐기물**
-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

100%

*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7

재난 폐기물 처분

-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감면대상]

[감면구분]

[감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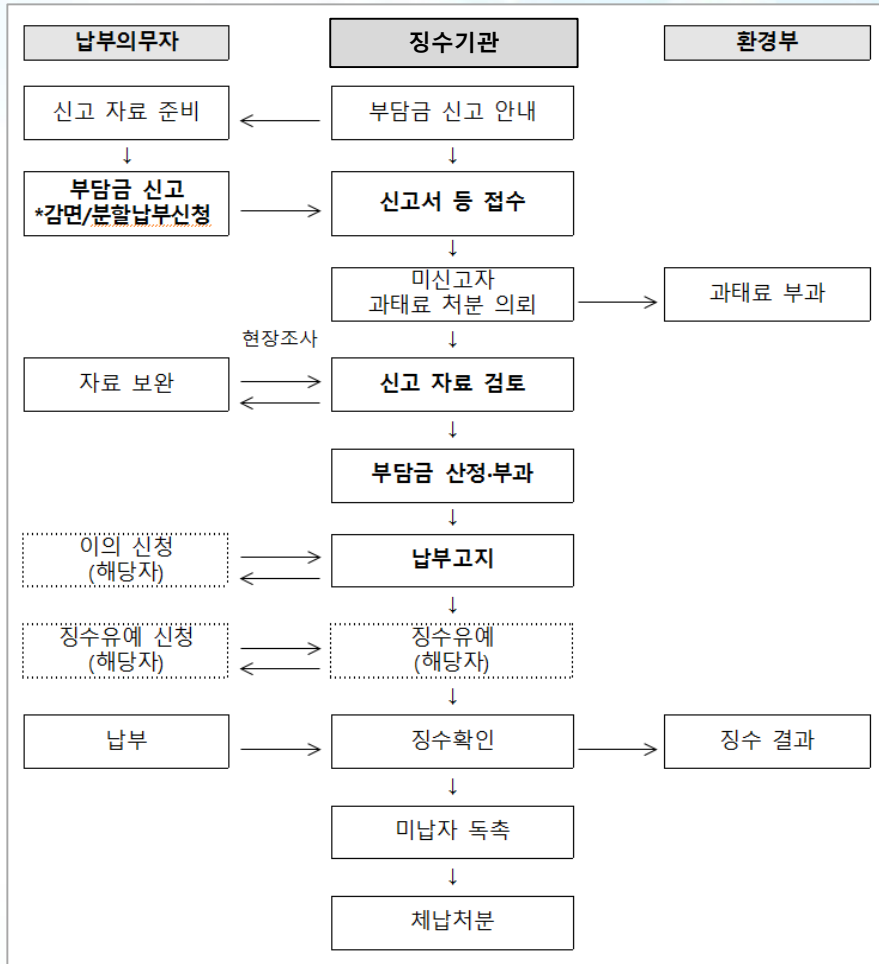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 소각 또는 매립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난·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납부의무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100%

4.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신고종류

- 정기 신고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 처분 실적 등을 신고 및 납부
- 수시 신고 : 건설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신고

신고·납부시기

정기 신고

~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매년 5월 20일

납부의무자
부담금 신고

징수기관
부담금
검토·산정

징수기관
납부 고지

납부의무자
부담금 납부

수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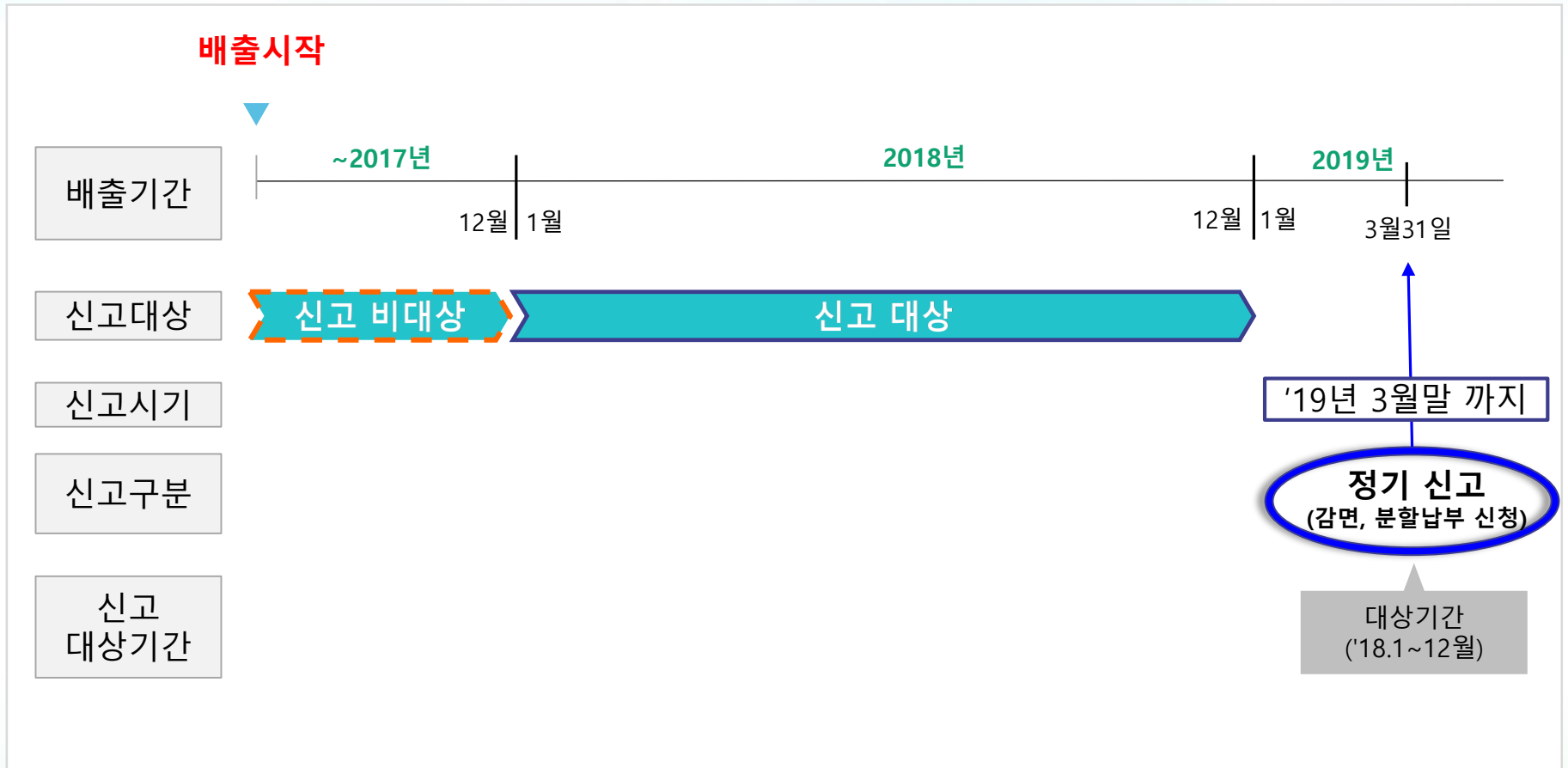
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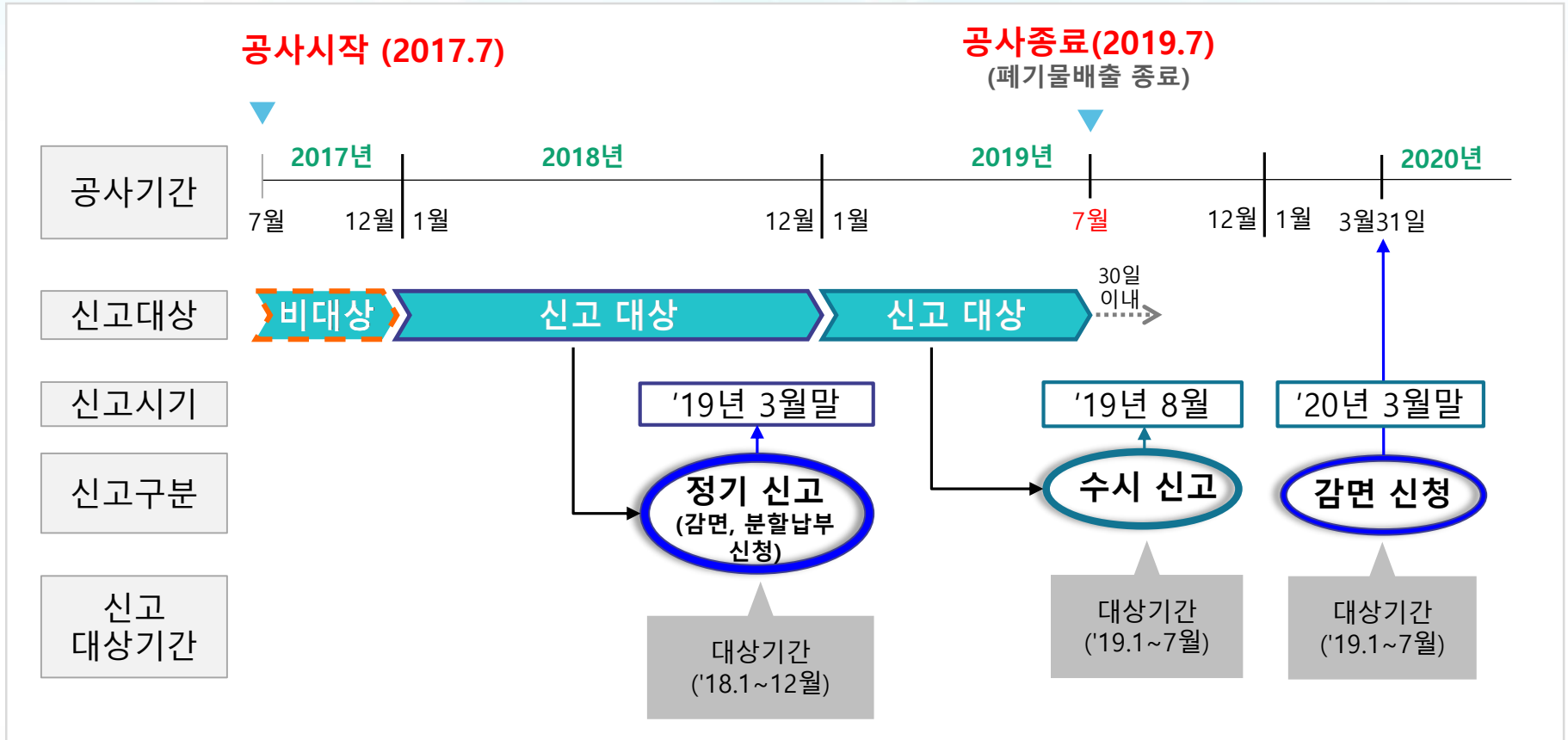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수시 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단, 지정폐기물/도서지역 폐기물 처분은 수시 신고 시 감면 신청)

[신고 예시 1]



[신고 예시 2]



-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 당해 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은 정기 신고 대상
- 연도 중에 배출이 종료되어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은 수시 신고 대상
 - 감면은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신청(단, 지정폐기물/도서지역 폐기물 처분은 수시 신고 시 감면 신청)

5.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등 방법

1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신고서

- 신고인(사업장 등)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연간 매출액 및 총폐기물 처분량
- 신고내용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폐기물유형, 처분방법, 처분량 등)
- 납부금액 및 총 신고금액

첨부서류

- 폐기물 유형,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 증명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해당자)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사본(해당자)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필증 사본(해당자)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처분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자가처분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책상이 어두운 곳은 신성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관					
신고인	상호(명칭)	(주)○○○산업		업종	○○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성명(대표자)	홍길동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111111-000000			
	주소(사업장)	○○광역시 중구 한강로 700		(전화번호 : 032-000-0001)					
담당자	성명(작성자)	○○○		직위	과장		전화번호 032-000-0005		
	납부의무자 구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 자가매립 후 재활용, [√] 소각열에너지회수,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중소기업, [] 지정폐기물처분, [] 도서지역폐기물처분, []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10,000,000,000 원				총 폐기물 처분량		250,000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자가 위탁	폐기물 처분량 (kg)	요금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폐기물 매립	폐식고	51-12-01	2	[] [√]	80,000	10	1	800,000	
				[] []					
				[] []					
총 신고금액(원)								800,000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자가 위탁	폐기물 처분량 (kg)	요금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폐기물 소각	폐합성수지류	51-03-01	3	[] [√]	70,000	10	1	700,000	
	재채부산물	51-20-02	3	[] [√]	100,000	10	1	1,000,000	
				[] []					
총 신고금액(원)								1,700,000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후 미재활용량 (kg)	요금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당해 1년차 2년차				50%		
해당없음									
폐기물처분부담금 총 신고금액(원)								2,500,000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

신청서

- 신청인(사업장 등)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연간 매출액 및 총 폐기물 처분량
- 신청내용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분방법, 처분량, 처분부담금 등)
- 감면사유, 감면금액

첨부서류

- (에너지회수 감면) 소각 처분한 폐기물 양에 대한 증명자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 (폐기물부담금 감면)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납부대상 제품 등 처분량 증명자료
- (중소기업의 감면)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정폐기물 감면) 지정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록)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주)○○○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9			
	성명(대표자) 이태백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사업장) 경기도 00시 한경로 700	전화번호 031-000-0001			
자가 매립 시설 현황	허가일시	사용기간		매립대상 폐기물종류	
	2012.10.8	25년		(51-13-03)석탄재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 매립량 (㎡)	잔여 매립량 (㎡)	
	4,123.567	4,123.567	187,645	3,666,832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자가 매립량 (kg)	해당연도 재활용량		해당연도 매립잔량		총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중량 (kg)	감면율 (%)			
석탄재	51-13-03	125,000	25,000	100	250,000	100,000	50	500,000	750,000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실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자가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내 미재활용량 (kg)
			당해	1년차	2년차	
석탄재	51-13-03	73,000(2018)	25,000	18,000	22,000	8,000
		64,000(2019)	19,000	20,000		25,000
		125,000(2020)	25,000			100,000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21년 3월 28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주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급지(60g/㎡))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대상

- 정기 신고 납부의무자
-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

납부방법

- 2회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납부

1회분

5월 20일 까지

2회분

10월 20일 까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분할납부 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1기	5월 20일		
	제2기	10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시·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

검토

→

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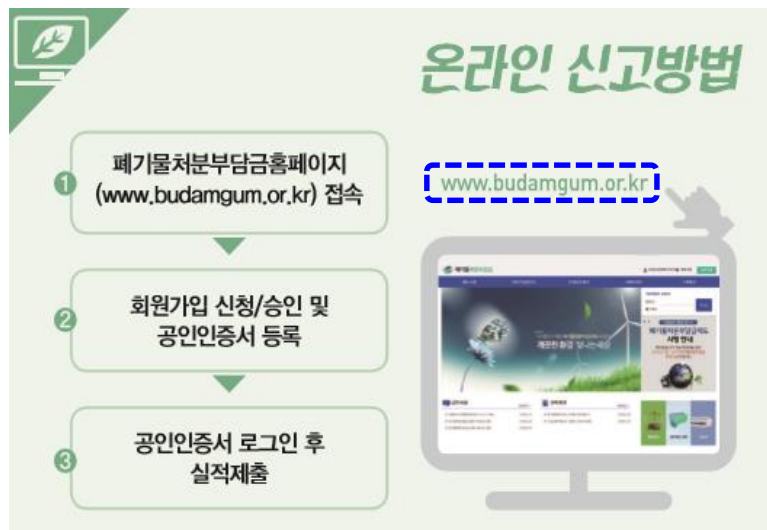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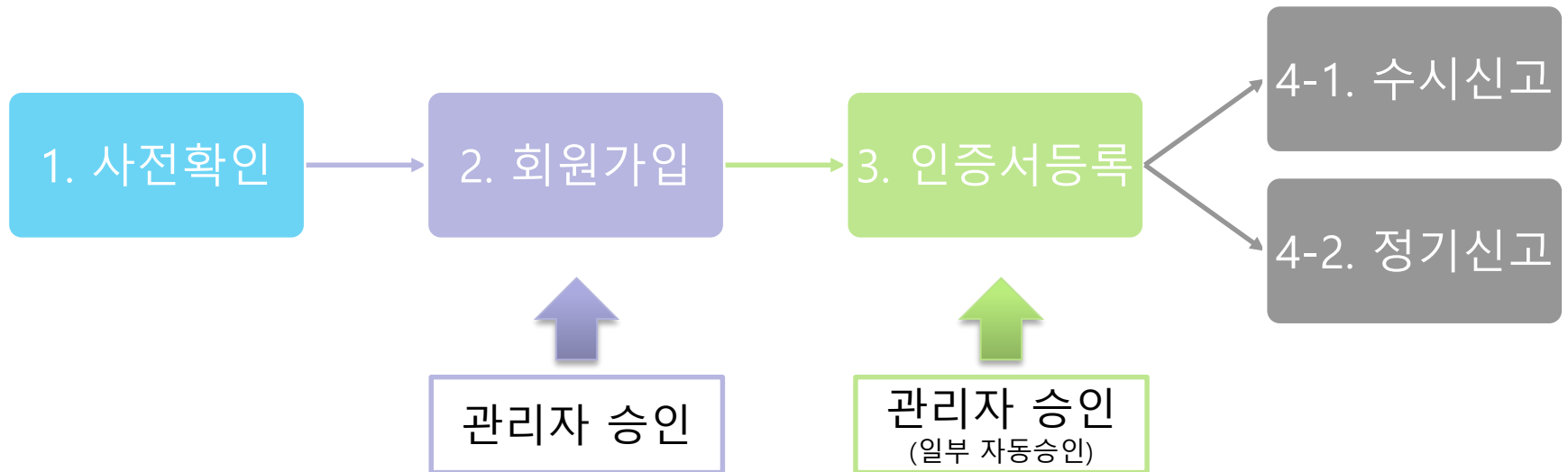
4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신고

www.budamgum.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감면 신청, 분할납부 신청 등 가능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제출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온라인 신고 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회원정보 체계



① 사업자 회원정보는 사업자-사용자-사업장으로 구성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만 회원가입 가능

③ 한 사업자 아래에 여러 사용자 회원가입 가능 → 사용자별 각각 회원가입 절차 진행(사용자별 ID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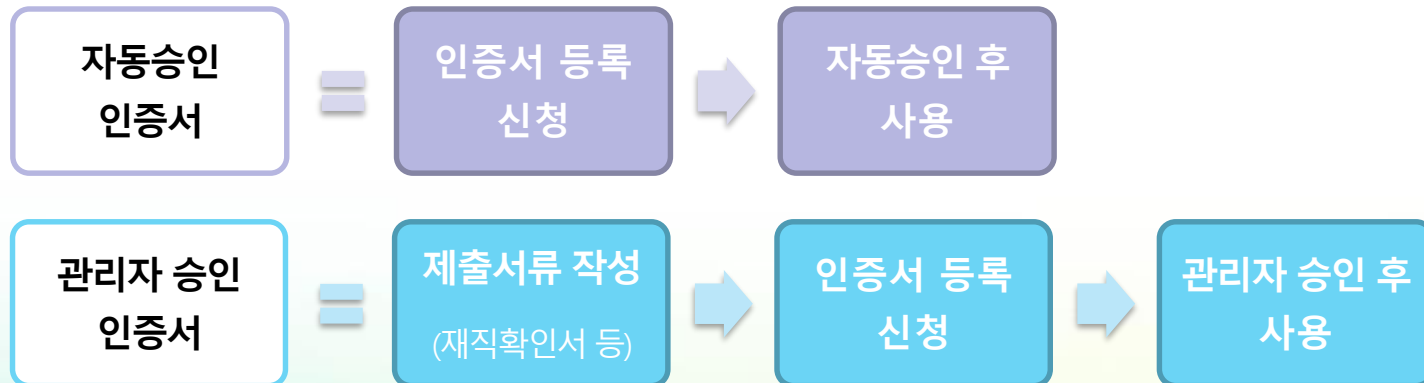
④ 사용자는 회원정보 - 사업자(장)정보수정 메뉴에서 여러 **사업장**(폐기물배출현장)을 추가할 수 있음 (관리자승인필요)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등록 가능 공인인증서

회원구분	인증서 구분 (인증서 소유주)	인증서 종류		
		범용	용도제한용	
			공단발급(올바로 등)	은행/증권용
사업자	사업자용 (법인/단체/개인사업자*)	자동승인	자동승인	관리자 승인
	개인용(직원 개인)	관리자 승인	-	관리자 승인
사업자 아닌 개인	개인용(본인)	관리자 승인	-	관리자 승인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용 인증서는 관리자 승인 대상입니다(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만 자동 승인)

<인증서 등록 절차>



5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검토

검토내용

신고자료	감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 -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 - 적용 요율 등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 - 기타 제출된 분석서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 -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량 적정성 -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합성 - 기타 감면대상 인증서, 시험분석의 적정성 등

검증방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그 밖에 처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으로 검증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21조제9항)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대장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 실적보고서

33

6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고지

- 납부고지서를 전산출력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직접교부 가능)

산 출 근 거

인터넷자료(www.giro.or.kr)와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전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 부 안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 번호			
회 계 연 도	회 계	소 관	징수관 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 부
납 부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입)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의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년 월 일

수 납 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 번호			
회 계 연 도	회 계	소 관	징수관 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 부
납 부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문의처 :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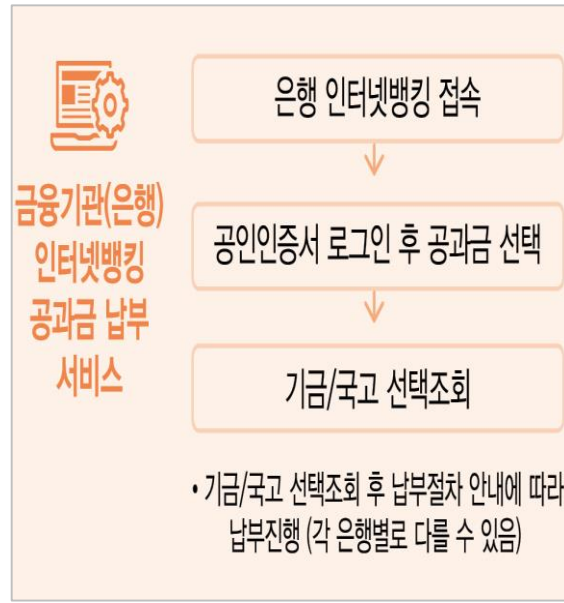
수 납 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방법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국고금 수납은행)



고지서 납부 (국고금 수납은행)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1 면)

산 출 관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 (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성명)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금액	원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2 면)

산 출 관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 (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성명)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금액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주채국
170mm×105mm(전산용지)

* 참고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지정 (수수료: 납부금액의 1 %)

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신청대상

- 12월 31일 이전 폐기물 배출 종료로 인한 **납부 고지를 받은 자 (수시신고)**
-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 (**정기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금액의 환급을 받은 자

신청시기

- 납부고지 이후 또는 감면금액을 반환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별지 제2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년 월 일	
부 과 금 액			
이의신청 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접수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원, 동
-----	--------------------	-------------

9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유예

신청사유

-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예대상

- 납부의무자가 신청사유로 납부기한 전까지 **처분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징수기관이 인정 시**

유예·납부

- 징수 유예(6개월 이내) 및 분할납부(3회 이내) 가능

* 징수유예 연장 : 위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징수유예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단,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요구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록)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징수번호	징수일시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주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 징수유예, [] 분할납부 또는 []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 등

부담금 환급

- **과오납된 금액**이 있거나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해당 **납부자에게 지급**

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체 납 처 분

- **독촉을 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사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전화. 032-590-5093)
홈페이지 : www.budamgum.or.kr